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과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과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4호, 2021. 12. 28., 전부개정, 2022. 6.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업 자체평가의 실시 및 점검, 특정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 계획의 수립,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 1)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학

-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 2)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등록·공개의 절차 등을 규정함
- 2)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실적 점검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1. 20. ~ 3. 2.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전략계획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사업 전략계획을 해당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략계획의 점검)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사업 전략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체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체평가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이행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조치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매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점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방문조사)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른 현장방문조사(이하 “현장방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원인과 조치계획
2. 그 밖에 자체평가 과정에서 현장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평가의 대상 선정)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특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관운영계획을, 기존 연구사업 연도가 종료된 이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차기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기관현황

2. 계획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직전 평가의견 및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연구기관의 법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법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기관 자체평가의 실시 및 결과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사항

2. 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 정해진 시기까지 법 제10조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연구사업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4월이 지나기 전까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 자체평가의 상위평가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과제평가 표준지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제19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및 자료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 방법·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이하 이 조에서 “추진상황 점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

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이하 “성과관리·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과거 3년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인 대학

2. 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해에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

공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점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추진성과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 및 체계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방안 및 전략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연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소관 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계획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효과성 분석 실시 및 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

2항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분석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계획의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4.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시연도의 6월 30일까지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효과성 분석 결과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과성 분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 제24조(정보의 제공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또는 상위평가를 거치는 경우에는 점검 의견 또는 상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체 없이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국방 관련 민감 정보,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4. 법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
6.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
8.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국방 관련 민감 정보,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록·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결과
2. 법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3. 법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성과평가·관리 담당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전략계획 관리
2. 성과평가 업무 총괄 및 지원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 성과관리·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5.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성과평가·관리 관련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협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

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전담조직 및 인력
2.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3.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보안체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전담기관에 대하여 해당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성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① 전담기관은 연구성과를 수집·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홍보 활동의 수행 및 정보 관리·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정지 및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 유지·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921